

開放時代와 山林養苗

本會理事 李 在 石

1. 前 言

只今 開放化의 물결은 政治 經濟 行政 文化各 方向에서 일고 있다.

社會主義 國家도 이제 市場經濟原理의一部를導入 開放하여 生必品의 需要充足을 암할 수가 없고 保守 資本主義 國家들도 分配 社會政策의一部를 開放하지 않을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開放時代의 물결을 따라 國際政治도 東西가 協力時代로 急變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國內外間에 開放時代를 맞아 가장 問題가 되는것은 이 農林業이라 할 수 있다.

開放의 본 뜻은 國際貿易部門에서는 關稅等保護貿易의 장벽을 트라는 것이고 國內的으로는法 또는 行政이 規制를 最小化하여 모든것을市場性 原理에 내 맡기라는 뜻이다.

이렇게 될때 모든 農產物 林產物 價格이 國際時勢보다 2倍以上 비싼터에 우리 農林業의 構造的問題와 더불어 生產性向에 이르기까지 比較劣位라는 명매를 벗기가 어려운 處地에 있다.

그리므로 政府는 只今 農漁村綜合對策으로 1兆 2千億에 가까운 農家負債를 制度金融으로 바꾸고 農漁資金 金利를 引下하여 '87年부터 '89年까지 年平均 總 2,500億원의 農家負擔을輕減하는 非常對策을樹立 推進中에 있다.

뿐만 아니라 '88年까지 年間 約 1兆원을供給하던 營農資金을 '89年 부터는 2倍로 늘려 2兆원을供給하는 計劃을 發表했다.

그러나前述한 2千5百億원의 農家負擔輕減은 1 農家當 平均 10餘萬원에 不過하다.

또 營農資金도 2兆원을 둔다 하드라도 1 農家當 100萬원에 不過하다.

그래서 年間 2,500億원의 農家負擔輕減과 2兆원의 營農資金 供給은 政府의 財政負擔은 너무 크다 하드라도 農民들은 이것을 크게 고맙

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山林部門도 마찬가지다. 年間 投融資를 合하여 約 1千億원의豫算是 國有林에는 配定하지 않고 全額民有林에 준다 하드라도 200萬 山主 1人當 5萬원 끌이다.

이와 같은 問題點의 結論은 우리 農山村의 農林業分野에 社會政策에는 限界點이 있다는 것을意味한다.

2百萬 農家와 2百萬 山主를 그대로 끌어두고 農山村의 社會對策에는 如何한 方法論도 實效를 거두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때는 많이 늦은감은 있지만 農地所有 上限線을 트고 通作距離다 不在山主 하는 法制度的裝置를 풀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資本制 農業 資本制 林業 으로 早速히 政策轉換을 해야한다. 그래서 논이고 밭이고 山이고 間에 大面積經營 機械化 또는 專門經營體制로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우리 農林業 問題를 解決할 시원한 答이 있을 수가 없다.

논밭이나 山값이 많이 올라서 이 資本制 農林業에 問題가 없는것은 아니나 開放化 時代에 對處할 길은 그래도 이길 以外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開放化 時代에 對處할 길은 理由 如何를 莫論하고 어떻게 生產費를 줄이고 良質인 商品을生產하여 生產費面으로 보아 優位立場에서 供給하느냐 하는 걸 그것 뿐이다.

2. 機械化와 施業基準 變化

여기서 開放時代라 함은 모든것을 市場性 原理에 따라 낮은곳으로 물이 흐르듯 順理에 따라야지 자꾸 行政的으로 또는 法으로 制裁를 加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只今 이 山林養苗는 行政이나 生產에서 수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

開放時代에 즈음하여 于先 山林養苗 分野에서 먼저 해야할 일은 現行 山林種苗事業 實施要領 即 山林廳 例規부터 改正해야 한다.

그理由는 現行 種苗事業實施要領에 依한 苗圃 床福 床長 基準本數로는 機械化를 할 수가 없다. 例를 들면 낙엽송이나 편백의 경우 1m²當 6 4本을 一定한 距離로 移植해서는 苗圃作業에 있어 가장많은 費用을 點有하는 除草를 機械化 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美國같은 外國의 例를 보면 可能한限 移植을 적게하고 그 代身 斷根作業을 主로 한다.

이 斷根作業을 效率的으로 하기 為하여도 現行 施業基準은 作業이 困難하다.

先進 外國에서 하는것을 보면 播種이든 移植이든間에 30cm 幅 이랑을 두고 30cm床에 密播植하는것이 大部分이다. 그래서 現 施業基準으로는 只今 우리 苗木生產者들이 機械化를 試圖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時急한것은 種苗事業實施要領을 早速히 改正하거나 그렇지 못할 形便이면 單位面積當 施業本數의 上限線을 정하고 床製作및 施業 苗木의 距離 幅은 施業者에게 맡겨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播種으로부터 据置와 移植問題等 機械化에 수반된 施業의 基準을 주먹구구로 할 수는 없는것이고 早速히 손을 써야할 것은 林業研究院에서 試驗을 하여 새로운 基準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樹種別 苗令別로 全體를 다루자면 短時日内에 全體 試驗을 하는것은 大端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重要 造林樹種 몇가지라도 當場 試驗을 해서 實地 이를 適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農村에는 只今 人夫가 없다.

人夫가 있어도 高令이거나 正常人夫의 半工程도 일을 하지 못한다.

農業勞動의 數도 問題이지만 質이 形便없이 떨어지는 판에 從前 例規에 依하여 1人1日 工程을 適用하고 人夫賃은 政府單價로 苗木代 生產

費를 計算한다면 苗圃業의 收支惡化로 漸次 質이 나쁜 苗木이 生產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앞으로 施業基準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基準이나 標準이지 이것을 絶對視 해서는 안된다.

圃地選定이 잘 되고 技術이 뛰어난 施業者는 單位面積當 生產高를 높이고 優良한 苗木 生產을 할 수 있는 者는 技術所得을 認定해야 되기 때문이다.

3. 苗木生産 指定과 價格決定

山林苗木이란 市場性이 없어서 大部分의 苗木이 政府造林計劃에 依하여 需給되며 때문에 각 道가 指定을 해서 生產하고 供給하고 있다.

苗木의 指定生產은 只今까지 그 指定生產이 長點이 더 많아서 해오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計劃指定生產을 하지 않을경우 많이 生產되는 苗木이 남아서 貴重한 財貨를 生產하여 버려야 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적게 生產할 경우는 造林計劃에 鏈跌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指定生產 制度는 計劃生產 이라는 큰 長點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反對로 指定生產일 경우 短點도 많다.

于先 指定을 함에 있어 養苗라는 것이 嚴然한 营利事業인데도 非營利公法人에게 指定을 해서 稅金을 물고 養苗하는 사람들과 競爭關係에 놓이게 하는 일이다.

只今 山林法이나 山林組合法에 學校 마을 山林組合 할것없이 다 山林養苗를 할 수 있도록 法이 規定을 했다.

山林養苗業의 資格을 規定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法精神이 優良健苗 生產을 위한 것일진데 마을이나 學校나 山林組合이 다 養苗資格이 있다면 이것은 國民皆養苗制度로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것을 法으로 資格을 規定할 必要가 없다.

그러므로 山林法이나 山林組合法을 改正해서 山林養苗 資格을 學歷, 經歷等 만으로 制限하여야 한다.

이렇게해서 資格者를 登錄해서 이 登錄業者는 아무나 自由롭게 山林養苗를 하여 優良苗

를 찬값에 生產한 것을 造林者가 選定 購人토록 해야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여 種苗販賣業資格登錄者는 누구나 自由競爭에 依해서 苗木을 生產하고 販賣해야 된다는 이 야기다.

只今까지 公法人의 經費充當을 為한 官의 養苗指定 같은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우리 옛날의 遺產이다.

이 養苗指定 制度를 없애면 當場 몇년간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適者生存의 原則에 依하여 漸次 秩序가 잡혀가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指定 非指定問題는 비단 이런 問題點만 있는것이 아니다.

山林養苗라는것이 工場에서 工產品을 만드는 것 같이 計劃生產이 어려워 旱水害等 天災를 對備해서 20 - 30 %를 더 生產하여 災害가 났을때 需給하게 되면 關係當局에서 非指定 苗를 需給했다고 야단이 나고 한다.

指定을 하지 않으면 이런 問題는 自然히 解消될 것이다.

그리면 指定을 하지 않을때 그 需給調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그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對하여 많은 의문이 있을것이다.

이웃 日本의 경우를 보면 山林組合이 그 管內 山主들이 向後 몇년간 造林할 物量의 大概를 파악하여 山林種苗組合에 알리면 이 種苗組合에서 組合員끼리 一定量式 分配 養苗를 한다 그래서 生產된 苗木은 山林組合이 山主가 造林할 山地까지 운반을 해준다.

이와같이 山林組合이 苗木生産計劃의 情報를 提供하고 苗木需給 알선을 하고 運搬을 해 주면 苗木原價의 20 %相當額을 山林苗木價格에 반영하여 山林組合에 알선 手數料를 주게된다.

그래서 山林組合은 山主造林을 돋고 養苗하는 사람들을 돋고 있다.

우리나라 같이 林業人을 도와줄 山林組合이 養苗를 해서 公法人이 營利林業人과 競爭같은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地球村에 山林組合이 山林養苗를 하는곳은

아무 나라도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考慮해야 할 것은 山林種苗價格의 決定 問題다.

山林法令에 依해서 政府計劃造林用 苗木을 山林廳長이 決定 告示하고 있지마는 이것 또한 世界各國을 통털어도 이런例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價格決定 亦是 政府가 價格을 決定 告示하는 問題는 그 長短點이 있다.

여기서 長點으로 내 세울수 있는것은 山林種苗는 그 樹種이 多樣하고 苗令이 復雜하여 웬만한 專門知識이 없이는 原價計算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林業研究院 이라든지 學界 또는 行政府의 集合된 高見을 들어 政府가 價格을 決定 告示하는것은相當히 理論的 背景을 뒷바침 한다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市場性 原理에 立脚하여 價格을 決定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苗木價格의 騰落幅이 적어 安定된 價格으로 需給이 可能하다.

그러나 政府가 價格을 全國一圓에 걸쳐 同一한 價格으로 決定하기 때문에 地域에 따라 많은 生產費의 差異가 생기게 된다.

먼저 地方에 따라 勞賃이 다르고 또 地方에 따라 借地料가 다르다.

따라서 劃一的으로 決定된 價格은 地方에 따라 利潤幅이 너무 큰것도 있다.

그리고 政府가 價格을 決定할 경우 언제나 政府勞賃單價를 適用함으로써 實際와 너무 거리가 있어 價格·現實化하는 언제나 거리가 멀다.

예를 들면 男子人夫賃의 경우 1日에 現金과 紙食 및 其他雜費를 合하면 全國을 통털어서 平均 12,000 원 가까운데 政府勞賃單價는 7,270 원으로 實地勞賃의 60 %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苗木價格의 實地勞賃을 할려면 各道別로 苗木生產者, 苗木需要者(造林家), 地方自治團體의 長및 山林組合 代表로 山林苗木 協定價格을 決定하도록 해야한다.

이와같은 制度가 생기면 造林補助도 只今까지 現物補助 하던것을 現金補助로 바꾸고 그것도 事後補助로 되어야 할 것이다.

山林苗木과 生產過程에서 가장 흡사한 桑苗의 경우도 蠶絲法에 依하여 農林水產部長官이 價格을 決定할 수 있지마는 農林水產部長官이 決定을 하지않고 蠶絲價格의 連動制 또는 協定價格으로 誘導하고 있다.

4. 結 言

平和를 사랑하는 우리 農林分野는 그 變革의 마당에서는 언제나 保守的이라 따라서 그 變化의 速度가 늦은것은 事實이다.

開放時代를 맞아 生產費를 줄이는 方法은 于先 機械化의 促進이다.

이를 위해서는 早速히 옛날에 손으로하던 施業基準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苗木의 生產指定制를 合理的으로 고쳐 가야 한다.

또한 政府告示價格制度를 再考해야 한다.

以上의 세 가지 큰 問題를 改革하여 優良한 種苗를 싼 값으로 供給하기를 바란다.